



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[시행 2023. 3. 10.] [창신대학교학교규정 제2023-16호, 2024. 4. 29., 일부개정.]

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, 055-250-3074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창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4.29.>

제2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주된 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와 지점인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내에 두며, 필요한 경우 교사시설 또는 교지 외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12.1.>

제4조(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)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제2장 조직

제5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6조(단장 및 부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8. 12. 1., 2023. 3. 8.>

② 단장의 임기는 후임 단장 임명시까지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1., 2023. 3. 8.>

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
④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임명방법은 단장과 같다. <신설 2018. 12. 1.>

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, 부단장이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하부조직의 설치)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.>

1. 부속 및 부설기관 : 연구사업단, 학교기업, 부설연구소

2.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

② 하부조직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.

제8조(행정사무) ① 대학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
③ 대학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본 대학의 교육·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운영 규칙 안에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4.4.29.>

제10조(감사) ① 산학협력단은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를 위해 감사 1인을 둔다.

- ②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④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감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
제3장 재산 및 회계

제11조(운영재원)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.

제12조(수입 및 재산) ①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18.12.1.>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 - 2.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
 - 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 - 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 - 5. 이자수입
 - 6.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 - 7.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
- ② 대학의 설립·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출)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1.>

- 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
 - 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 - 3. 대학의 시설·운영 지원비
 - 4. 제12조 제1항, 제2호 내지 제7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 - 5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 - 6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 - 7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 - 8.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
-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.

제14조(재산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12.1.>

- 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- 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- 3. 채권의 포기

제15조(회계관리)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.

-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제16조(회계기관)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
-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,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1.>

제17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8조(예·결산서 제출)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·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9조(비밀유지의무)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조(정관의 변경)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(해산)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
- ② 해산은 대학 총장의 명에 의한다.
-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.
- ④ 해산시 단장은 대학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22조(공고)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1.>

- 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 - 2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 - 3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- ② 공고방법은 일간지로 한다.

부칙 <제2023016호, 2023. 3. 8.>

이 정관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4000호, 2024. 4. 29.>

이 정관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